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제11항)에 따라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2013.05.3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청약가점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됨)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1.12.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방법의 변경이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5월 31일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 평형으로 축소되었으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이 4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변경되어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2015년 2월 27일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1년, 12회 납입'으로 완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15.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나,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개정 2012.09.25)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2009.4.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경우는 최저층) 우선 배정 대상 주택형신청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배정하는 등을 우선 배정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 16994호(2015.11.1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84개동 총 9,510세대(조합분양 6,543세대, 임대주택 1,401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558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9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분 1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9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 4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약식표기)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민영주택	2015001291-01	39.1000A	39A	39.1000	22.2700	61.3700	28.9200	90.2900	21.4888	155	16	16	16	5	102	12
	2015001291-02	39.1200B	39B	39.1200	22.4100	61.5300	28.9400	90.4700	21.5448	18	1	–	1	–	16	5
	2015001291-03	39.8600C	39C	39.8600	22.6000	62.4600	29.4900	91.9500	21.8704	4	–	–	–	–	4	0
	2015001291-04	39.1700D	39D	39.1700	22.2700	61.4400	28.9800	90.4200	21.5133	24	2	2	2	1	17	1
	2015001291-05	49.1900A	49A	49.1900	23.2800	72.4700	36.3900	108.8600	25.3754	2	–	–	–	–	2	0
	2015001291-06	49.2900C	49C	49.2900	23.6200	72.9100	36.4600	109.3700	25.5295	21	2	2	2	–	15	5
	2015001291-07	59.9600	59	59.9600	24.1400	84.1000	44.3600	128.4600	29.4477	174	18	18	18	5	115	39
	2015001291-08	84.9800A	84A	84.9800	22.9900	107.9700	62.8600	170.8300	37.8058	67	7	7	7	2	44	26
	2015001291-09	84.9900B	84B	84.9900	24.7700	109.7600	62.8600	172.6200	38.4326	3	–	–	–	–	3	1
	2015001291-10	84.9900C	84C	84.9900	24.8800	109.8700	62.8600	172.7300	38.4711	32	3	4	3	1	21	11
	2015001291-11	84.9900D	84D	84.9900	25.1100	110.1000	62.8600	172.9600	38.5516	146	15	15	15	4	97	48
	2015001291-12	84.9800E	84E	84.9800	24.7500	109.7300	62.8600	172.5900	38.4221	32	3	2	3	1	23	22
	2015001291-13	84.9500F	84F	84.9500	25.2200	110.1700	62.8400	173.0100	38.5761	131	14	14	14	4	85	24
	2015001291-14	84.9800G	84G	84.9800	23.4500	108.4300	62.8600	171.2900	37.9669	18	2	2	2	–	12	9
	2015001291-15	84.9800H	84H	84.9800	23.7300	108.7100	62.8600	171.5700	38.0649	3	–	–	–	–	3	1
	2015001291-16	84.9400I	84I	84.9400	22.7200	107.6600	62.8300	170.4900	37.6972	3	–	–	–	–	3	1
	2015001291-17	84.9600J	84J1	84.9600	22.7000	107.6600	62.8400	170.5000	37.6972	28	3	2	3	1	19	12
	2015001291-18	84.9600	84J2	84.9600	22.7000	107.6600	62.8400	170.5000	37.6972	28	3	2	3	1	19	12
	2015001291-19	84.9800K	84K	84.9800	23.0300	108.0100	62.8600	170.8700	37.8198	36	3	4	3	1	25	11
	2015001291-20	84.9700L	84L	84.9700	23.7500	108.7200	62.8500	171.5700	38.0684	33	3	4	3	1	22	8
	2015001291-21	110.6600A	110A	110.6600	29.6000	140.2600	81.8600	222.1200	49.1122	330	–	34	–	10	286	15
	2015001291-22	110.4400B	110B	110.4400	30.6400	141.0800	81.6900	222.7700	49.3993	186	–	20	–	6	160	9
	2015001291-23	130.0600	130	130.0600	33.8500	163.9100	96.2000	260.1100	57.3932	84	–	8	–	3	73	4

※ 상기 주택형 중 '84.9600J', '84.9600'형의 사업시행인가시 타입은 각각 상기 약식표기인 '84J1', '84J2'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전용면적)	동(라인)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16.01.04	중도금 1차(10%) '16.06.03	2차(10%) '16.11.03	3차(10%) '17.04.03	4차(10%) '17.11.03	5차(10%) '18.04.03	6차(10%) '18.09.03	잔금(30%) 입주지정일
39A	103(1~5)	1층	1	270,392,000	147,008,000	417,400,000	20,870,000	20,87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125,220,000
		3층	1	288,336,000	156,764,000	445,100,000	22,255,000	22,255,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133,530,000
		4층	1	291,316,000	158,384,000	449,700,000	22,485,000	22,485,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134,910,000
		5~10층	5	294,296,000	160,004,000	454,300,000	22,715,000	22,715,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1~20층	10	295,850,000	160,850,000	456,700,000	22,835,000	22,835,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137,010,000
	103(6)	2층	1	276,416,000	150,284,000	426,700,000	21,335,000	21,335,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128,010,000
		5~10층	4	291,316,000	158,384,000	449,700,000	22,485,000	22,485,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134,910,000
		11~20층	1	292,806,000	159,194,000	452,000,000	22,6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209(1~5)/210(1~2)	1층	4	274,926,000	149,474,000	424,400,000	21,220,000	21,22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42,440,000	127,320,000
		3층	4	292,806,000	159,194,000	452,000,000	22,6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5~10층	8	298,830,000	162,470,000	461,300,000	23,065,000	23,065,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138,390,000
		11~20층	9	300,320,000	163,280,000	463,600,000	23,180,000	23,18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139,080,000
	210(3~5)	1층	1	271,882,000	147,818,000	419,700,000	20,985,000	20,985,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125,910,000
		2층	1	280,886,000	152,714,000	433,600,000	21,680,000	21,68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130,080,000
		4층	1	292,806,000	159,194,000	452,000,000	22,6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5~10층	6	295,850,000	160,850,000	456,700,000	22,835,000	22,835,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137,010,000
		11~20층	8	297,340,000	161,660,000	459,000,000	22,950,000	22,95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21~30층	2	298,830,000	162,470,000	461,300,000	23,065,000	23,065,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138,390,000
	308(1~2)	3층	1	297,340,000	161,660,000	459,000,000	22,950,000	22,95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10층	1	303,300,000	164,900,000	468,200,000	23,410,000	23,41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11~20층	3	304,790,000	165,710,000	470,500,000	23,525,000	23,525,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주택형(전용면적)	동(라인)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16.01.04	중도금 1차(10%) '16.06.03	2차(10%) '16.11.03	3차(10%) '17.04.03	4차(10%) '17.11.03	5차(10%) '18.04.03	6차(10%) '18.09.03	잔금(30%) 입주지정일
84B	413(3)	1층	1	533,075,000	289,825,000	822,900,000	41,145,000	41,145,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246,870,000
		2층	1	549,788,000	298,912,000	848,700,000	42,435,000	42,435,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254,610,000
		3층	1	566,501,000	307,999,000	874,500,000	43,725,000	43,725,000	87,450,000	87,450,000	87,450,000	87,450,000	87,450,000	87,450,000	262,350,000
84C	205,206(4)	1층	2	512,993,000	278,907,000	791,900,000	39,595,000	39,595,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79,190,000	237,570,000
		2층	2	529,706,000	287,994,000	817,700,000	40,885,000	40,885,000	81,770,000	81,770,000	81,770,000	81,770,000	81,770,000	81,770,000	245,310,000
		3층	2	546,419,000	297,081,000	843,500,000	42,175,000	42,175,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253,050,000
	207,219(4)	1층	2	526,921,000	286,479,000	813,400,000	40,670,000	40,670,000	81,340,000	81,340,000	81,340,000	81,340,000	81,340,000	81,340,000	244,020,000
		2층	2	543,634,000	295,566,000	839,200,000	41,960,000	41,96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251,760,000
		3층	2	560,347,000	304,653,000	865,000,000	43,250,000	43,25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259,500,000
	314(4)	1층	1	521,349,000	283,451,000	804,800,000	40,240,000	40,240,000	80,480,000	80,480,000	80,480,000	80,480,000	80,480,000	80,480,000	241,440,000
		2층	1	538,063,000	292,537,000	830,600,000	41,530,000	41,530,000	83,060,000	83,060,000	83,060,000	83,060,000	83,060,000	83,060,000	249,180,000
	405(4)	1층	1	536,378,000	291,622,000	828,000,000	41,400,000	4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2층	1	553,156,000	300,744,000	853,900,000	42,695,000	42,695,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256,170,000
		3층	1	569,870,000	309,830,000	879,700,000	43,985,000	43,985,000	87,970,000	87,970,000	87,970,000	87,970,000	87,970,000	87,970,000	263,910,000
		11~20층	1	583,797,000	317,403,000	901,200,000	45,060,000	45,06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270,360,000
	406,418(4)	1층	2	533,593,000	290,107,000	823,700,000	41,185,000	41,185,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247,110,000
		2층	2	550,306,000	299,194,000	849,500,000	42,475,000	42,475,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84,950,000	254,850,000
		3층	2	567,084,000	308,316,000	875,400,000	43,770,000	43,77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262,620,000
	410(4)	1층	1	525,236,000	285,564,000	810,800,000	40,540,000	40,54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243,240,000
		2층	1	541,949,000	294,651,000	836,600,000	41,830,000	41,83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250,980,000
		3층	1	558,728,000	303,772,000	862,500,000	43,125,000	43,125,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417(4)	1층	1	539,164,000	293,136,000	832,300,000	41,615,000	41,615,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249,690,000
		2층	1	555,942,000	302,258,000	858,200,000	42,910,000	42,91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257,460,000
		3층	1	572,655,000	311,345,000	884,000,000	44,200,000	44,2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265,200,000
		5~10층	1	583,797,000	317,403,000	901,200,000	45,060,000	45,06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90,120,000	270,360,000
	514(4)	1층	1	535,277,000	291,023,000	826,300,000	41,315,000	41,315,000	82,630,000	82,630,000	82,630,000	82,630,000	82,630,000	82,630,000	247,890,000
		2층	1	551,990,000	300,110,000	852,100,000	42,605,000	42,605,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255,630,000
84D	102,202,204(2)	1층	3	515,195,000	280,105,000	795,300,000	39,765,000	39,765,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238,590,000
		2층	3	531,909,000	289,191,000	821,100,000	41,055,000	41,055,000	82,110,000	82,110,000	82,110,000	82,110,000	82,110,000	82,110,000	246,330,000
		3층	2	548,687,000	298,313,000	847,000,000	42,350,000	42,35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254,100,000
	102,109,208(3)	1층	3	514,029,000	279,471,000	793,500,000	39,675,000	39,675,000	79,350,000	79,350,000	79,350,000	79,350,000	79,350,000	79,350,000	238,050,000
		2층	3	530,807,000	288,593,000	819,400,000	40,970,000	40,97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245,820,000
		3층	2	547,585,000	297,715,000	845,300,000	42,265,000	42,265,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84,530,000	253,590,000
		5~10층	1	558,728,000	303,772,000	862,500,000	43,125,000	43,125,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21~30층	2	564,363,000	306,837,000	871,200,000	43,560,000	43,56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87,120,000	261,360,000
	106,112(2)	1층	2	520,766,000	283,134,000	803,900,000	40,195,000	40,195,000	80,390,000	80,390,000	80,390,000	80,390,000	80,390,000	80,390,000	241,170,000
		2층	2	537,544,000	292,256,000	829,800,000	41,490,000	41,49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248,940,000
		3층	2	554,258,000	301,342,000	855,600,000	42,780,000	42,78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256,680,000
		21~30층	1	571,036,000	310,464,000	881,500,000	44,075,000	44,075,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88,150,000	264,450,000
	106,112,201(3)	1층	3	519,665,000	282,535,000	802,200,000	40,110,000	40,11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240,660,000
		2층	3	536,378,000	291,622,000	828,000,000	41,400,000	4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3층	3	553,156,000	300,744,000	853,900,000	42,695,000	42,695,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256,170,000
		21~30층	1	569,934,000	309,866,000	879,800,000	43,990,000	43,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263,940,000
	107(2)	1층	1	509,559,000	277,041,000	786,600,000	39,330,000	39,330,000	78,660,000	78,660,000	78,660,000	78,660,000	78,660,000	78,660,000	235,980,000
		2층	1	526,338,000	286,162,000	812,500,000	40,625,000	40,625,000	81,250,000	81,250,000	81,250,000	81,250,000	81,250,000	81,250,000	243,750,000
		3층	1	543,116,000	295,284,000	838,400,000	41,920,000	41,920,000	83,840,000	83,840,000	83,840,000	83,840,000	83,840,000	83,840,000	251,520,000
		11~20층	1	557,108,000	302,892,000	860,000,000	43,000,000	43,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258,000,000
	107(3)	1층	1	505,673,000	274,927,000	780,600,000	39,030,000	39,03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78,060,000	234,180,000
		2층	1	522,451,000	284,049,000	806,500,000	40,325,000	40,325,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241,950,000
		3층	1	539,164,000	293,136,000	832,300,000	41,615,000	41,615,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249,690,000
		11~20층	1	553,156,000	300,744,000	853,900,000	42,695,000	42,695,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256,170,000
	109(2)	1층	1	506,774,000	275,526,000	782,300,000	39,115,000	39,115,000	78,230,000	78,230,000	78,230,000	78,230,000	78,230,000	78,230,000	234,690,000
		2층	1	523,552,000	284,648,000	808,200,000	40,410,000	40,410,000	80,820,000	80,820,000	80,820,000	80,820,000	80,820,000	80,820,000	242,460,000
		3층	1	540,330,000	293,770,000	834,100,000	41,705,000	41,705,000	83,410,000	83,410,000	83,410,000	83,410,000	83,410,000	83,410,000	250,230,000
	201,208,218(2)	1층	3	512,345,000	278,555,000	790,900,000	39,545,000	39,545,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237,270,000
		2층	3	529,123,000	287,677,000	816,800,000	40,840,000	40,84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245,040,000
		3층	2	545,901,000	296,799,000	842,700,000	42,135,000	42,135,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252,810,000
		21~30층	2	562,679,000	305,921,000	868,600,000	43,430,000	43,43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260,580,000
	202,204(3)	1층	2	522,451,000	284,049,000	806,500,000	40,325,000	40,325,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241,950,000
		2층	2	539,164,000	293,136,000	832,300,000	41,615,000	41,615,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83,230,000	249,690,000
		3층	2	555,942,000	302,258,000	858,200,000	42,910,000	42,91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257,460,000
		5~10층	1	567,149,000	308,351,000	875,500,000	43,775,000	43,775,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87,550,000	262,650,000
	203,213(2)/401(3)	1층	3	529,123,000	287,677,000	816,800,000	40,840,000	40,84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81,680,000	245,040,000
		2층	3	545,901,000	296,799,000	842,700,000	42,135,000	42,135,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84,270,000	252,810,000
		3층	2	562,679,000	305,921,000	868,600,000	43,430,000	43,43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86,860,000	260,580,000
	203,213(3)	1층	2	528,022,000	287,078,000	815,100,000	40,755,000	40,755,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244,530,000
		2층	2	544,800,000	296,200,000	841,000,000	42,050,000	42,05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252,300,000
		3층	2	561,578,000	305,322,000	866,900,000	43,345,000	43,345,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260,070,000
	218(3)	1층	1	525,236,000	285,564,000	810,800,000	40,540,000	40,54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81,080,000	243,240,000
		2층	1	542,014,000	294,686,000	836,700,000	41,835,000	41,835,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251,010,000
		3층	1	558,728,000	303,772,000	862,500,000	43,125,000	43,125,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5~10층	1	569,934,000	309,866,000	879,800,000	43,990,000	43,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263,940,000
	316,317,318(2)	1층	3	537,544,000	292,256,000	829,800,000	41,490,000	41,49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248,940,000
		2층	3	554,258,000	301,342,000	855,600,000	42,780,000	42,78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256,680,000
	316,317,318(3)	1층	3	536,378,000	291,622,000	828,000,000	41,400,000	4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2층	3	553,156,000	300,744,000	853,900,000	42,695,000	42,695,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85,390,000	256,170,000
		3층	1	569,934,000	309,866,000	879,800,000	43,990,000	43,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263,940,000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2015.11.17(화) / 10:00~14:00	송파 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연락처 02-449-7440]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5.11.17(화) / 16:00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순으로 추첨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일반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19조 제6항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7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청약자격 요건 미달, 유주택자 또는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및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로서 주택공급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할 수 있음. 단, 1층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비대상자 포함)에서는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일 : 2015.12.01(화) ~ 2015.12.03(목) (3일간, 10:00~16:00,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9A	39B	39C	39D	49A	49C	59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1	84J2	84K	84L	110A	110B	130	계
일반 특별공급		16	1	–	2	–	2	18	7	–	3	15	3	14	2	–	–	3	3	3	3	–	–	–	9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8	–	–	1	–	1	9	4	–	2	7	1	7	1	–	–	1	1	2	2	17	10	4	78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8	–	–	1	–	1	9	3	–	2	8	1	7	1	–	–	1	1	2	2	17	10	4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16	1	–	2	–	2	18	7	–	3	15	3	14	2	–	–	3	3	3	3	–	–	–	9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	–	1	–	–	5	2	–	1	4	1	4	–	–	–	1	1	1	1	10	6	3	46
합 계		53	2	–	7	–	6	59	23	–	11	49	9	46	6	–	–	9	9	11	11	44	26	11	39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9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1) 당해지역 거주자, (2) 추첨 순의 선정방법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15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생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95세대)

- 신청자격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 제8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한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인정기준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되는 경우 더 이상 청약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 선택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되며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경우는 해당 층 중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4. 청약신청 방법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특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견본주택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송파 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2순위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일반공급 청약접수 종료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임.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특별공급은 제외 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입주자격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6.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 중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다. 118.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및 외부 상세 설계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9.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120.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는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고, 상부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씽크장 상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수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스 관련법에 의거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다.
121.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된다. 122. 표기된 사업승인도서상의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123.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124.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5.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26.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127.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
128.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29. 지하주차장 및 지하 연결통로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된다. 130. 지하주차장 구조는 RC+PC 복합화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PC복합구조에서 복합화는 일부 강합성 부재를 포함하여, PC부재(기둥,보,슬래브 등)의 크기, 형태, 강도 등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131.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2.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이 5개구역, 지하3층이 4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133. 모형 및 카달로그의 옥상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34 단지외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공사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된다. 135. 아파트 옥상과 인접한 세대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에 관리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6.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다. 137. 쓰레기 분리수거소에 면하는 APT주동쪽으로 쓰레기 반출입을 위한 차량이 진/출입 됨으로 인하여 주변동에 차량소음, 냄새 등의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8. 주동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 변경될 수 있다. 139. 상위 계획에 의해 단지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시설이나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다. 140.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된다. 141.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42. "을"은 공급자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한다. 143.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대피창의 재질 및 개폐방식(여닫이, 미서기 등)은 사용성 개선, 하자방지 등을 위해 착공 이후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44. 301동, 502동 부근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45. 112동, 218동, 318동, 402동, 516동 지붕층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됨에 동의한다. 146. 59 type (25평)의 대피공간은 바닥에 햇치 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됨에 동의한다. 147. 단지중앙 2, 3권역 사이의 선큰 벽천은 물의 낙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한 주변 주동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48. 1구역의 탄천 유수지에 인접한 세대는 악취, 소음, 해충 등에 의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9. 1구역의 111동에 인접하여 광역하수관 및 유수지 옹벽 등이 대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권자(송파구청)에 의한 영구 지상권 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0. 서울시의 경전철 위례 신사선 정거장이 탄천교 사거리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11동에 인접하여 향후 일부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 151. 단위세대 실별 비 내력 칸막이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지면과 직접 면하는 주동부 코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 결로 방지를 위한 이중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3. 130A type (49평) 및 150A type (58평)의 부부욕실 샤워부스의 유리 칸막이 디자인은 견본주택의 POP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4. 1권역의 생태학습실에 인접한 세대는 외부 마감자재에 의한 빛산란 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55. 사업부지는 비행안전구역(2구역, 6구역)에 속하여 일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 시행자, 시공자 등에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156.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사업주체명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법인등록번호: 116271–0004414)**
- **시공업체명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279433) /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007909) /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015762)**
-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 / 분양안내 : 02–449–744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송파헬리오시티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문의 449-7440

www.heliocity-songpa.co.kr

총 9510세대 중
일반공급 1558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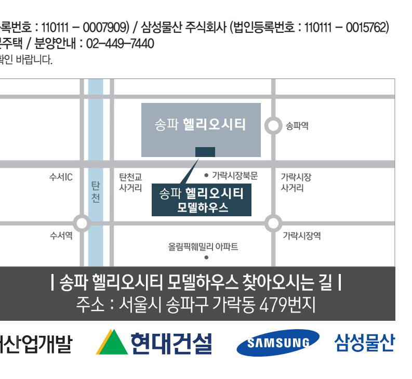

| 송파 헬리오시티 모델하우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시행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AMSUNG 삼성물산